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April 2012 **Vol. 34** 5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

Interview
이한수 익산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성인지예산제도

4 ● 권두언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6 ● KRILA 논단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

10 ● Interview
이한수 익산시장

15 ● 자치단체 탐험
귓가에 맴도는 서동요의 고향, 전북 익산

18 ● 해외 우수사례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

22 ● 도시통계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현황

26 ● 연구원 동정

27 ● 알림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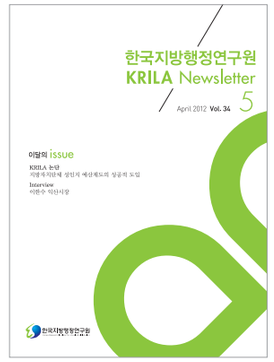

5 March 2012 **Vol. 3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34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한 표 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201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2010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2011년에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그래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의 변화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하여 재정자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효과를 시정하고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분리된 예산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지출을 대상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는 예산기법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하나의 예산분석기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최근에는 분석기법의 수준을 넘어 분석결과를 정책형성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예산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1980년 이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효시로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예산제도가 확산 발전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그 구현수단으로 성인지예산제도라는 새로운 장치를 고안하는 동시에 이를 전통적 예산과정에 접목시키는 변화를 야기시켰다. 특히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2000년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각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핵심구현수단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성인지예산사업은 정부 총지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동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상에는 성인지예산 인프라 구축의 미비, 관계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관련 기법 및 지식의 부족, 이해관계자의 성인지에 대한 마인드 및 관심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막 제도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에 많은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은 훌륭한 교훈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 도입 및 운영과정의 벤치마킹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240여개의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조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하나의 표준화된 제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제도가 되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인식변화,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홍보, 지역별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조직의 적극적인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성인지예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와 기존의 지방예산제도와의 연계,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개발, 성별통계의 구축, 성별영향분석기법의 개발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기법 및 지식함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분석기법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정보제공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6년에 시·도 자치단체가 설립하여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복식부기제도, 사업예산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 성인지예산센터를 신설하고 관련분야를 전문적,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



이 효
(지방성인지예산센터 소장)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념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부예산제도에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의 관점을 강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는 예산과정에 성인지 및 성인식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운용 효과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제도적 시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 ·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이므로, 정책의 균등한 혜택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평균이용시간이 여성(2분 30초)과 남성(1분 24초)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로등 설치 예산에서 여성의 밤길 안전성을 고려하거나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여성 중심(유방암, 갑상선암, 자궁암 등)에서 남성(전립선암 등)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구성하는 등 성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예산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예산의 편성 · 운용 ·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경비성격, 인구와 소득, 지역적 특성 등을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다루어왔으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등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혜택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관심하였다. 이에 반해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활동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성별 수혜격차를 줄여 예산집행 효과의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과정에 성별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분석기법에 반영하고, 성별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향후 예산의 불평등한 성별 격차를 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집행의 주민 만족도 제고와 양성평등의 구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지방성인지예산의 추진배경 및 대상사업

오늘날 성인지예산제도는 선 · 후진국을 망라하여 전 세계 약 90 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마침내 국가 차원의 법제화를 이끌어 내었다. 즉,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재정법(제26조, 제57조)」을 개정(’06.10.4) 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3.8)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 ·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지방 성인지 예산서 작성범위와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조직운영이나 회계적 성격의 예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 ~'12)사업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최근 3년간('09 ~ '11) 성별영향평가사업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등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하여 통보
선택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2012. 3.

3. 성공적 도입을 위한 요건

양성평등의 구현과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발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와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예산제도와의 연계 운영 면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결산서와 조화·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구조이며, 2014년도부터 성과관리체계(성과계획, 성과평가) 및 성과예산체계를 통해 예산집행의 성과를 환류·반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양성평등 구현의 관점에서 대상사업에 대해 성별수혜분석, 성평등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예산사업에 직접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는 자치단체 조직부서의 전략목표, 상위 성평등 목표 등과 연계하고, 성과지표도 현행 정책사업의 성과지표와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간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사업의 경우 본래적 사업목표와 함께 성인지 관점에서 성평등 목표를 추구하는 사업이므로 양자를 포함하여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지표는 해당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별 비율, 사업의 효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지방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기준)을 수용하는 접근을 취하되, 자체사업 중 성인지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적 파급효과를 내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향후 성인지 예산의 관리 차원에서 해당 대상사업을 예산과목구조와 연계시켜야 한다. 요컨대 지방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중심점으로 설정하고, 상위 항목인 단위사업 및 정책사업 그리고 조직을 연계해 나가는 구조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분석이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의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시, 성인지 관점에서 사업목적, 성평등목표, 성별수혜분석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인지에 대한 이유, 객관적 근거, 주요 쟁점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거나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다음연도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예시) 공공시설 화장실에서 유독 여성들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들은 생리구조상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길지만, 화장실 수는 똑같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니즈(needs)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사업이 현실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혜 영향에 차이를 미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넷째, 성인지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의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성별영향평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두 제도 간에는 기본개념과 지향하는 바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사실상 별개의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지 예산의 성별영향분석/수혜분석 등에 필요한 통계 및 서술적 분석은 실제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의 내실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핵심내용을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외에 성인지예산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방단위 성별통계 구축, 지방 성인지예산 거버넌스, 관계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기법 및 지식 함양, 국가와 지방의 성인지 예산관련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 예산사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국고보조/자체사업 등)과 지역적 특성(광역시·도, 시군구 등)을 고려하여 지방 실정에 적합한 성인지 예산서 적용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전반적 여건과 개별 지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일시에 전면적 도입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단계별 실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자료」, 2012.3.
임성일 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인프라 구축방안」, 여성가족부,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 2011.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 익산

이 한 수
익산시장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바쁘신데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가 우리나라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심하는 것 중의 하나도 인구감소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는 저출산 문제보다는 젊은 층이 일자리와 좋은 교육을 찾아서 대도시로 나가는 것에 있다. 익산시는 인구유입을 위해 기업을 유치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 가족내에서 거주의 선택은 여성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익산으로 내려오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성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만 가족이 오고 도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익산시만이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익산의 이미지 문제이다.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도시 브랜드를 높여야만 기업도 유치하고 도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의 이미지 쇄신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2008년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시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수립된 단계별 계획에의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친화거리

익산은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 출발지다. 2009년 3월 26일 익산시가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익산시장, 익산지역 대표들, 익산시민들은 익산시를 여성가족부가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길목,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익산 비전의 하나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노력과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돌봄 역할을 하는 여성을 위한 배려 공간, 여성우선주차장

익산지역에서는 일반 주차구획선보다 폭이 20cm 넓은 여성우선주차장을 쉽게 볼 수 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우선주차장


엄마와 아이를 위한 수유실
공원 유모차 대여 서비스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수유실 조성 및 공원 유모차 대여 서비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관공서와 공공장소에서 수유실을 찾아보기 힘들다. 익산은 여성친화도시정책을 하면서 공공건물에 수유실을 설치해왔다. 또한 어린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는 가족을 위해 주요 공원에서 유모차를 무상 대여해주고 있다.

● 여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개선은 모든 시민을 위한 것

브랜드 택시(1,000대) 운영, 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설치, 스쿨존 내 횡단보도 정비,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 정비 등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노약자 이동이 편리한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 시민에게 사랑받는 가족 공원으로 변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익산시 공원내 가족 커뮤니티공간으로 광장겸용 바닥분수를 설치하였고, 휴식공간도 늘려나갔다.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을 위해 진입부 단차를 줄였고, 어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하였다.


서동공원

● 야근 걱정 끝! 시간연장보육시설 서비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지역발전에 있어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익산시는 맞벌이 부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과 싱글대디를 위해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늦은 시간(24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므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고, 특히 혼자서 아이 키우는 싱글맘(대디)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익산시 보육시설 263개소 중 시간연장보육시설은 104개소(전체보육시설의 39.5%), 이용아동수는 500여명에 이른다.

● 여성일자리 지원 및 여성기업인 지원

익산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후 사후관리 등 구직 여성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9년 46.2%에서 2010년 47.4%로 상승하였다. 또한 그동안 은행 등에서 여성의 경영능력 등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거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여성기업인을 위해, 익산시는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친여성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기업인의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마케팅 지원(10개소)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정책(12개소, 22억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1호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는 여성기업인의지원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찾아가는 직업상담(동신아파트)

"향후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중점을 두실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정책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익산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년간 익산시가 제도적 기반 구축과 행정조직내의 협업 등으로 여성친화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 익산시의 명성을 높여왔다면 향후 3년은 시민과의 협업체계를 만들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결실을 맺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더 많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민과 함께 여성과 아이들을 배려하는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계획하고, 노약자 이동이 편리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익산의 미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모습일 것이다. 보도를 정비할 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하이힐 신는 여성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아 걷고 싶은 도시, 생활권 내에 공원 면적이 충분하여 가족이 건강한 도시,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노약자를 돌보는 여성도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점은 없었는지요? 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 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 추진하는 사업들에 여성친화적인 요소를 찾아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예를 들면, 보도정비 사업비는 해마다 편성되고 집행된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보도정비 사업할 때 담당부서에서는 유모차와 휠체어 끌고 다니기 편한 보도, 하이힐을 신고 걷기 편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익산시 주요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 도시 전반에서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익산시청 여성친화담당관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정책 관련 인프라 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평등정책 추진 경험도 협소했던 익산시가 평등한 도시를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회, 시민단체에게 대단한 자극을 주었다. 익산시민은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익산시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이 큰 성과다.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은 재정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없이는 더 이상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가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따라야 하고, 공감대 형성과 교육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장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성인지예산제도를 준비해왔다. 익산시 공무원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성불평등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교육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부서에서는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과제 선정, 작성 방법 등을 면담을 통해 컨설팅해주고 있다. 이런 노력은 익산시 성인지 예산서를 모범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성인지 예산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 의지가 확고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담·정리 : 서 정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시간과 국경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사랑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서동요의 고향, 전북 익산



세상엔 수많은 연인들이 있다. 그 연인들은 서로 보듬고 아끼며 함께한 시간을 추억으로 남긴다. 그 추억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으로 혹은 어떤 이에겐 구구절절하고 아련하게 느껴지는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각자의 삶을 지탱하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다.

그 개인의 스토리텔링이 사랑의 노래로 전승된 경우가 있다. 서동이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노래. ‘서동요’가 그것이다. 아직도 그 서동요가 들려오는 곳이 있는데, 사적 제 150호 미륵사지가 있는 전북 익산이다.

서동이 무왕으로 즉위한 이후, 선화공주가 용화산 밑 큰 못에서 미륵삼존을 보고 절을 만들어 달라 청하여 세워진 미륵사. 익산의 역사적인 의미에서 미륵사지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미륵사는 도읍 수준의 지역에서 설립할만한 절의 크기라는 것. 두 번째로 도읍지가 아니었던 익산 곳곳에 산성이 설치되었다는 점이 백제 때, 익산이 도읍과 같은 수준의 요충지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미륵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터인 미륵사지와 서동설화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의 결실로써, 그 세월의 흔적을 무심히 지켜내고 있다.



미륵사지 전경

입구를 따라 미륵사지에 들어서면 유물 전시관이 바로 보이는데, 이 유물 전시관에는 문헌, 유물, 건축문화, 체험, 기획이란 주제로 전시관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중앙에 전시되어있는 미륵사 추정복원 모형은 그 크기와 웅장함을 짐작하게끔 한다. 가운데 있는 목탑의 양옆으로 동탑과 서탑 (현재 복원 중인 미륵사지석탑)이 있어 아름다운 대칭의 미를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유물 전시관에 나와 복원된 동탑을 보면, 세월의 흔적은 느끼지 못할지언정 석탑의 미적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미륵사지석탑이라 불리는 서탑의 경우, 국보 제 11호로써 우리나라에 위치한 석탑 중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그 규모가 커 선조들의 위대한 석조기술을 엿볼 수 있다. 목조건물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석탑이전 목탑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 역사적 의미도 크다. 원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놓아 복원되는 모습을 기대하게끔 한다.


유물전시관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


보물236호 당간지주

서탑 복원현장을 나오면서 보물 제 236호로 지정되어있는 당간지주도 볼거리 중 하나이다.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 당이라는 깃발을 새우는데 사용한 당간지주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 크기가 크고 양 지주가 마주하고 있어 대칭의 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백제시대와 현대를 이어주고 있는 유물로써, 갈라진 하단부와 지주의 손상이 지나온 세월을 짐작하게 한다.

문헌실로 가보면 창건 설화를 그림과 짧은 글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어릴 적 들었던 서동설화를 떠올리며 보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선화공주를 흡족하게 만든 사랑의 힘을 조금은 느끼게 된다 할까?

하지만 이런 사랑의 힘을 의심하게 한 유물이 있었으니, 09년도에 미륵사지석탑의 해체 · 보수작업 중 생각지도 못한 1층의 사리공에서 발굴된 금제사리봉안기가 바로 그것이다. 일제시절 석탑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발라놓은 시멘트가 유물로써의 가치를 헤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해체 · 보수작업이 뜻밖의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허나 봉안기에 쓰여 있는 내용 중, 사리구를 봉안한 주체가 무왕의 황후인 '좌평 사택적덕의 딸' 이라고 기록되어있어 미륵사 건립 설화의 진의가 의심 받게 되었다.


금제사리봉안기

전문가와 일반인들 모두 서동설화는 사실에 입각한 설화라는 것을 중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 내용은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동설화는 무왕이 아닌 무령왕이나 동성왕대의 이야기일 가능성과 무왕의 황후가 둘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가설 등이 학계에서 왕성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동이 어떤 왕이었던 황후가 몇이었던 이 사랑이야기가 전북 익산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랑이야기가 글과 구전으로 남아 익산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5월을 맞아 가족과 연인 혹은 친구들과의 여행은 전북 익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미륵사지를 걸으며 1,400년이 지나 이어 내려오는 사랑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보면 그 고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누구나 매료될 것이다.

정리 (주)소프트하우스 www.e-softhouse.com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



김 혜 란
(주성대학교 교수)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각국의 여성정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성(gender) 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의 중요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GAD(Gender and Development) 접근방식으로 여성의 주류화를 도모하면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성 관점에서의 정책분석에 관한 여성단체의 활동과 전문가의 연구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2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법조항이 '여성발전기본법'에 포함되면서 국가차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여성의 주류화 문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체제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그 후 기획예산처는 2006년에 국가재정법상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이 시작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성인지 예산분석은 젠더 관점에서 정부의 지출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의 기본 가정은 공공정책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분석은 여성에게 적합한 것 같지 않은 예산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다. 흔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게 예산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은 공감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까지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예산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 같은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묵시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익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인지 예산분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1984년 호주에서는 국가예산이 '여성예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성인지 예산보고서의 시작이 되었다. 이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10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성지위에 대한 국가예산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분석대상인 예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각 나라 성인지예산제도가 다르게 제도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각 나라의 제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보다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일반예산을 분석대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의 한국에서의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용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체적인 일반예산보다는 직접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형이다.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처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관련 예산들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국내 여성단체의 초기 예산분석활동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스웨덴과 인도의 성인지예산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기로 한다.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웨덴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의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삶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권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2009년 노동시장과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성평등에 관해서도 일관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은 노르딕 국가, 유럽 및 세계의 다른 국가와의 국제협력에서도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성평등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일반예산에 대한 성인지예산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주로 거시경제정책과 젠더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보다는 일반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자원배분의 문제를 분석하고 예산서 부록을 작성하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한 분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 및 임금 등과 같은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젠더 이슈에 대한 불평등 현황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돌아가는 자원배분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성인지예산의 핵심적인 개념에 부합한다. 지방정부에서의 성평등의 목표 역시 여성이건 남성이건 시민으로서 같은 활동과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스웨덴은 성평등 정책으로 제도화하면서 성평등 목표와 성주류화의 연계 속에서 성인지예산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여성아동부를 중심으로 국제적 기구의 전문가들과 정부 대표들과의 합의에 의해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아동부는 1990년대 말부터 워크샵을 통해 예산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를 이끌었다. 2005/2006년의 예산부터 예산서에 성인지예산서를 포함하였다.

초기의 성인지예산은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예산 즉 여성을 위한 정책예산이나, 여성의 성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함께 성별영향평가, 성별 분리통계, 정책결정과정의 평가 등을 주도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개발하였다. 주류예산에 대한 성인지예산분석의 확대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와 함께 지방정부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가발전기본계획에서 여성예산계획(Women's Component Plan)이 도입되면서 여성예산계획은 사전적 계획의 예산의 의미를, 성인지예산은 사후적 감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 정부 차원에서의 젠더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인도의 성인지예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성인지예산은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예산분석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여성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인 이해가 쉬웠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스웨덴과 같이 예산의 보고서 형식 형태로 성인지예산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성평등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의 성인지예산의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은 성인지예산이라는 단편적인 제도의 정착보다는 성주류화를 위한 성평등목표의 추구를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사회의 성불평등 구조의 개편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착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의 성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인 여성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과 함께 성인지예산서에 표시됨으로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으로 명시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인 '성특정예산'과 '성형평성예산'을 '여성예산'으로 별도로 명시화하고, 그 외의 사업들을 일반사업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스웨덴과 같은 예산의 보고서로서의 성인지예산서가 제시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여성예산'의 정치적 의의와 효과를 고려하여 여성예산 부분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성인지예산서의 운영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성인지예산의 도입 초기과정에서도 여성단체조직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 그 역할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의 거버넌스가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현황

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 여성정책회의 설치 및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에 관한 항목을 마련하였음

- 2004년에 10개 사업에 대해 시범운영 실시 후, 2005년부터는 중앙정부,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전 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사업과 예산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이 질적인 발전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2012년 3월 16일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가 의무화 됨
-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사업 결과에 대한 통계치 생산(몰성적(gender blinded) 통계가 아닌 성별분리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생산), 성인지 통계 구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다음 〈표1〉은 정치, 경제, 행정, 문화, 연금 등의 사회 각 영역에 관련된 성별분리통계들임

〈 표 1 〉 성별분리통계

항목			전체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08.4	62.0%	74.1%	50.5%
		'09.3	60.2%	72.7%	48.4%
		'09.10	61.3%	73.1%	50.0%
		'10.10	61.4%	73.4%	50.0%
		'11.9	61%	72.9%	49.5%
취업인구		'08.4	24,495,000명	14,271,000명	10,224,000명
		'09.3	24,062,000명	14,183,000명	9,879,000명
		'09.10	24,655,000명	14,380,000명	10,275,000명
		'11.9	24,318,000명	14,180,000명	10,138,000명
연령대별 취업인구	'09.10	20-24세	1,253,000명	478,000명	776,000명
		25-29세	2,756,000명	1,472,000명	1,285,000명
		30-34세	2,779,000명	1,784,000명	995,000명
		35-39세	3,262,000명	2,068,000명	1,194,000명
		40-44세	3,347,000명	1,991,000명	1,357,000명
		45-49세	3,385,000명	1,995,000명	1,390,000명
	'11.9	20-24세	1,122,000명	408,000명	408,000명
		25-29세	2,509,000명	1,312,000명	1,312,000명
		30-34세	2,763,000명	1,746,000명	1,746,000명
		35-39세	2,973,000명	1,916,000명	1,916,000명
		40-44세	3,330,000명	1,984,000명	1,984,000명
		45-49세	3,259,000명	1,923,000명	1,923,000명
지방직5급이상 공무원수		'05	16,026명	15,306명	15,306명
		'10	20,078명	18,348명	18,348명
국가직 5급이상 공무원수		'06	1,265명	1,229명	1,229명
		'10	1,473명	1,423명	1,423명
월평균 임금 (1인이상기업)		'06		2,249,000원	2,249,000원
		'10		2,284,000원	2,284,000원
실업율		'08.4	3.2	3.6	3.6
		'09.3	4.0	4.5	4.5
		'09.10	3.2	3.6	3.6
		'10.10	3.3	3.5	3.5
		'11.9	3.0	3.3	3.3

*자료: 송인자(2012),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강의자료집에서 재인용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체계는 크게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각 기관의 평가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와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됨
  - 각 기관에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평가 대상과제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의 우선선정기준을 준수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효과가 큰 중요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이미 양성평등한 정책효과를 위해 계획·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동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 평가 유형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업무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가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심층평가로 구분됨

2.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 2010년 성별영향평가는 292개 기관이 참 여하고 총 2401개 과제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 3개 정책에 대하여는 심층평가가 실시되었음

〈 표 2 〉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증감율)	과제수 (증감율)	기관수 (증감율)	과제수 (증감율)
계	295	1,531	298 (1.0)	1,908 (24.6)	292 (▽2.0)	2,401 (25.8)
중앙행정기관	31	78	34 (9.7)	72 (▽7.7)	31 (▽8.8)	71 (▽1.4)
지방자치단체	248	1,437	248 (–)	1,820 (26.7)	246 (▽0.8)	2,314 (27.1)
지방교육청	16	16	16 (–)	16 (–)	15 (▽6.2)	16 (–)

*자료: 여성가족부 각연도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로부터 재정리

- 2010년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시·도교육청 등 292개 기관에 달함
  - 이들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참여한 과제 수는 중앙행정기관 총 71과제, 광역자치단체가 총 430과제, 기초자치단체가 총 1,884과제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총 16과제 등 총 2,401과제임

〈 표 3 〉 광역자치단체의 2010년 성별영향평가 참여 현황

기 관	과제 수	기 관	과제 수	기 관	과제 수
서 울	11(7)	울 산	10(10)	전 남	16(10)
부 산	53(49)	경 기	98(63)	경 북	23(5)
대 구	32(24)	강 원	24(27)	경 남	11(10)
인 천	20(10)	충 북	33(31)	제 주	24(25)
광 주	19(11)	충 남	19(17)	계	430(335)
대 전	12(19)	전 북	25(17)		

*주: ( ) 안은 2009년도 참여과제 수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201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표 4 〉 기초자치단체의 2010년 성별영향평가 참여현황

구분	참여한 기초지자체 수	과제 수
서 울	25	179(168)
부 산	16	211(178)
대 구	8	119(80)
인 천	10	152(75)
광 주	5	59(61)
대 전	5	89(122)
울 산	5	48(35)
경 기	31	184(153)
강 원	18	97(113)
충 북	12	106(85)
충 남	16	111(71)
전 북	14	96(70)
전 남	22	112(92)
경 북	23	204(70)
경 남	20	101(101)
제 주	(2)	16(11)
계	232	1,884(1,485)

*주: ( ) 안은 2009년도 참여과제 수를 의미함 *자료: 여성가족부(2011),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신 두 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201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천대학교 공동세미나 개최

주 제 /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일 시 / 2012. 5. 16(수) 14:00~18:00
장 소 /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국제홀(1층)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천대학교

제5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정책대학원대학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한 · 일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제도
일 시 / 2012. 5. 10(목) 14:00
장 소 / 제주 그랜드호텔 루비홀(세미나실)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대학원대학

2012년 1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한 · 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및 과제
일 시 / 2012. 5. 31(목) 14: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201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연수대회 개최

일 시 / 2012. 4. 26(목)~27(금), 여주 · 제천
장 소 / 여주 · 제천

정기간행물 발간

- **연구자료집 출판**
  – 제목 :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현민
- **KRILA FOCUS (4월호)**
  – 지방행정체제 및 자치구개편 동향과 정책 제언



KRILA 교육연수

담당자 : 이혜선 02 · 3488 · 7353

- **제2기 지역공공디자인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05. 09 ~ 05. 11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사업예산과 복식부기회계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05. 16 ~ 05. 18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3기 주민자치센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05. 30 ~ 06. 01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